

제270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4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20 - 26
- 나. 제 출 자 : 박성호 의원 외 5명
- 다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라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20일

2. 제정이유

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강서구민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강서구 국기 게양일을 정함(안 제4조)
- 나.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다. 국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

라. 국기 게양 관리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
마.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대한민국국기법」, 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
라. 입법예고(2020. 4. 14~4. 19) 결과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·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 내용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공인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, 강서구민의 날, 강서구의회에서 의결한 날을 강서구 국기게양일로 정함(안 제4조)
-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5조)
- 국기게양대 설치, 국기달기 운동 등 국기선양사업 추진 및 국기

선양 교육·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·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

- 오염·훼손된 국기에 대한 즉시 교체 및 게양대 상태의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등 국기게양에 대한 관리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 국기 게양일 및 국기선양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극기의 중요성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,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 및 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」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과 선양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,
-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극기 사랑과 선양사업 추진 등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대한민국국기법

제4조(대한민국의 국기) 대한민국의 국기(이하 "국기"라 한다)는 태극기(太極旗)로 한다.

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
2.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
3. 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
4.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
5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
□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

제2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·지원한다.

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.